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농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46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관한 권한 위임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구체화(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 나. 독성의 정도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을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안 제20조제1항)
- 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명시적 위임(안 제22조제3항 5의2 및 5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6항”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품목등록취소 등에 관한 심의)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의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한 농약 안전성 평가 심의를 말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성의 정도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5의3.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및 분쟁조정과정에 드는 별도 비용의 징수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 관련 약해시험등) ①농촌진흥청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 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 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u>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병해충</u> <u>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u> <u>· 억제</u> 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 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 우에는 직권으로 약해(藥害) 또 는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 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 관련 약해시험등) ①----- ----- ----- ----- <u>법 제14조제7항</u>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품목등록취소 등에 관한</u> <u>심의)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u> <u>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의</u> <u>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u> <u>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u> <u>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u> <u>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u> <u>규정에 의한 농약안전성심의위</u> <u>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제8조의2(품목등록취소 등에 관한</u> <u>심의)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u> <u>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u> <u>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심의절차”란 제11조의 농약</u> <u>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한 농약</u> <u>안전성 평가 심의를 말한다.</u>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 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의2. (생략)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
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후단 신설>

3. 4. 삭 제

5.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① _____

1.·1의2. (현행과 같음)

2. -----

-----, 다만 독성의
정도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
업자는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조 정위원회 구성·운영

5의3.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
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및 분쟁조정과정
에 드는 별도 비용의 징수

6. ~ 18. (생략)	6. ~ 1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1895